



# 2026년 국제무역사 개정·정오사항 안내

( 전면개정 3쇄.2025.11.01)

## ※ 안내사항 ※

개정 출간 당시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의 표현이 법에서 완전히 개정되지 않아 기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험에서는 당분간 구표현, 신표현이 함께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엽서가 교재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무꿈사 나혼자도 가능한  
국제무역사 1급**

2026 시험대비 주요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무꿈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무꿈사의 모든 웹사이트 바로가기 →   
 [키베라 어플] > [QR코드 접속] > [웹사이트 바로가기]

### 📢 국제무역사 1급 주요 사항 안내

2025년 10월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외무역법 및 시행령, 관세법은 개정되었으나,  
 현재 「대외무역관리규정(대외무역법 고시)」과  
 「관세법 시행령 및 시행 규칙」은 개정되지 않아  
 교재 또한 기존 명칭으로 표기되었습니다.

이후 시험이 진행될 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 「재정경제부(장관)」  
 으로 변경된 명칭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에서는 구표현으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 ① 무꿈사 아카데미 (<https://mkacademy.co.kr>)  
교재 구매자 CBT 무료 제공 - Q&A게시판 확인 必
- ② 무꿈사 네이버 카페 (<https://cafe.naver.com/mgsedu>)  
기술문제 PDF 및 문제 관련 Q&A 제공

무꿈사는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 ※ 표현변경 ※

	기존표현	개정표현
대외무역법 표현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

	기존표현	개정표현
관세법 표현 변경	기획재정부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 ※ 정부간 수출계약 세부 표현 정정 ※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6 정부간 수출계약 세부 표현 정정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산물자등은 제외)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전담기관은 정부간 수출계약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제 업무이행 결과에 따라 이득을 보지 아니하며, 또한 손해를 보지도 아니한다.	"정부간 수출계약"이란 외국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이 국내 기업을 대신하여 또는 국내 기업과 함께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외국 정부에 물품등(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산물자등은 제외)을 유상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와 체결하는 수출계약을 말한다. <b>정부는</b> 정부간수출계약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제 업무이행 결과에 따라 이득을 보지 아니하며, 또한 손해를 보지도 아니한다.

## ※ 보세구역 장치물품 축소 ※

교재 페이지	기존표현	개정표현
P. 72 보세구역 장치물품 축소	외국물품과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려는 내국물품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b>외국물품</b> 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할 수 없다.

## ※ 구매대행업자 연대책임 기준변경 ※

교재 페이지	기존사항	개정사항
P. 140 구매대행업자 연대책임 기준변경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자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b>수령한 경우</b> : 구매대행업자와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